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9.23)

IBK 가치형 롱숏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AS659)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IB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에 투자하여 채권 및 주식 등의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롱숏전략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BK 가치형 롱숏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내주식에 40%이하로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KIS 국고채 1~2년×10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고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IBK 가치형 롱숏40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전략]

채권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롱숏 주식전략 등 및 커버트콜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에 50%이상, 주식에 40%이하, 증권차입을 10%미만으로 투자합니다.

주식 순편입비율^{주)}은 20%이하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커버트콜 전략 추가 시, 주식에 대한 순 포지션은 2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매수(Long) 전략** :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매수
- **매도(Short) 전략** : 매수 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기업의 가격이 가치 대비 고평가 받고 있거나 제 가치를 받고 있는 기업 매도
- **이벤트 드리븐 롱숏전략** : 기업 관련 이벤트 발생(합병/분할, M&A, 블랙딜, 공모주 등)시 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 추구
- **커버트콜 전략** : 주식(ETF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활용한 커버트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대가치 전략** : 동일한 자산에 대해 다른 가치가 부여된 자산이 있을 경우 매수/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추구
- **주식순편입비율***은 20%이하 수준에서 관리. 단, 시장상황이 급변동하거나 매니저의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순주식편입비율은 일정기간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특히, 커버트콜 전략 추가 시, 주식에 대한 순 포지션은 2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주식순편입비율: long(주식매수 평가비중)에서 short(주식 차입매도비중과 주가지수선물매도 비중)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의미함 [추가알파전략] ▪ 중소형 가치주 매수 전략 : 철저한 상향식 리서치를 통해 명품기업들을 선정하여 투자유니버스 구축. 구축된 투자유니버스를 바탕으로 하향식 리서치를 통해 마켓 타이밍을 파악하여 절대수익 가능 구간에서 매수 주1) 상기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시장상황에 따라 상기의 전략 중 일부 전략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국내혼합채권형)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4%이내	0.6780	0.340	0.7300	0.6825	111	186	263	429	9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9880	0.650	1.1100	0.9929	104	213	325	564	1,24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이내	0.5080	0.170	0.5300	0.5127	74	130	188	314	6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6630	0.325	0.6900	0.6679	70	143	220	382	854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 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3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5.09.24 ~ 26.09.23	최근 2년 24.09.24 ~ 26.09.23	최근 3년 23.09.24 ~ 26.09.23	최근 5년 21.09.24 ~ 26.09.23	설정일 이후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2014.09.23	25.98	20.34	16.64	10.10	5.75				
	비교지수(%)	-	1.48	2.46	3.20	2.54	2.14				
	수익률 변동성(%)	-	13.14	10.05	10.49	9.46	6.90				
	(주1)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년×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대진	1982	책임(부장)	54개	142,405억원	19.68	15.97			18년 7개월	
	박상욱	1985	책임(부장)	11개	2,615억원	27.09	21.45	19.68	15.97	7년 5개월	
김찬우	1993	책임(과장)	3개	281억원	27.09	-			2년 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tr><th colspan="2">주요투자위험</th><th colspan="2">투자위험 주요 내용</th></tr><tr><td>원본손실 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tr><tr><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tr><td>파생상품 투자위험</td><td colspan="3">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tr><td>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td><td colspan="3">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td></tr><tr><td>집중투자에 따른위험 (종목)</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td></tr><tr><td>롱숏전략위험</td><td colspan="3">이 투자신탁은 주식 롱숏(Long-Short)전략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롱숏 전략 수행시, 매도한 주식(Short)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Long)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와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 전략 수행시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및 주식 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table>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위험 (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롱숏(Long-Short)전략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롱숏 전략 수행시, 매도한 주식(Short)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Long)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와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 전략 수행시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및 주식 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투자위험 주요 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위험 (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 및 일부 산업에 속하는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 및 업종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롱숏(Long-Short)전략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롱숏 전략 수행시, 매도한 주식(Short)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한 주식(Long)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매수)와 숏(매도)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매수)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 전략 수행시 비용(예기치 못한 비용 포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 매도한 주식의 상환청구 및 주식 차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을 활용하여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낮을 경우 커버드콜 전략 중 옵션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 수익이 제한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옵션매도 프리미엄 수익이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가입한 수익자는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27-8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bk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7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B)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	

	판매 경로	온라인 (e)	서 1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최초납입금액 20억 이상인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문투자 자(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호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인 경우 매입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